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서석영 의원 외 19명)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석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서석영·배한철·한창화
김진엽·허복·신호광
김재준·정근수·노성환
이충원·박채아·김대진
손희권·임병하·김창혁
황재철·백순창·임기진
김일수·황명강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23~'24 경북 한랭질환자 44명)
- 이에 폭염 피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개정함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조례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홍보활동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취약계층 지원, 쉼터, 저감시설 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바.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11조~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289, '25. 2. 24.)

나.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민자활성화과(정책기획관-2258, '25. 2. 20.)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2258, '25. 2. 20.)

라. 해당부서 의견: 의견없음

- 재난관리과(정책기획관-2258, '25. 2. 20.)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290, '25. 2. 24.)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경상북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폭염·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폭염·한파로부터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 내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정부의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취약지역 홍보활동)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온열기 등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한파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쉼터의 냉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개인 건축물 등에 시행하는 쿨루프 설치 사업(옥상녹화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폭염·한파 저감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5호 관련)

폭염·한파 저감시설	정 의
쿨루프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스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및 나무식재 등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스마트승강장	냉·온열의자, 냉난방시스템, 공기정화살균기, 정류장 안내단말기, 핸드폰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말한다.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외부를 감싸는 투명 재질의 가림막 시설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폭염 및 한파 피해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자연재해 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안 제8조)
- 무더위·한파쉼터 지원 (안 제9조)
-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안 제10조)
- 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제9조(무더위·한파쉼터 지원), 제10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및 제11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폭염 및 한파라는 예측 불가한 재해 특성상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 마련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예산입법담당관실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최홍기 054-880-5053